

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

2000. 9. 30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9. 2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 재 식)

가. 제안이유

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의무사항을 삭제함  
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용어 정비

나. 주요골자

○ 은닉재산 신고의무 폐지

- 신고의무 사항 지방재정법과 중복

- 신고의무 사항 폐지로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

○ 일부 관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

- “사용허가코자”를 “사용허가하고자”로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)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을 발견  
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외의 불필요  
한 조문을 삭제하고,  
일부 관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: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3항중 “은닉재산신고서”를 “은닉재산 신고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사용허가코자”를 “사용허가하고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④ 내지 ⑤ (생략)</p>	<p>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③ ----- 은닉재산신고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코자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,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주어야 한다.</p>	<p>제12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--- 사용허가하고자----- ----- ----- -----</p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[지방재정법]

제88조(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)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]

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지방재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(이하 “은닉재산”이라 한다.)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(이하 “신고자”라 한다.)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2.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요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.

②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

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, 다만,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2.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

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